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지성호ㆍ이 용ㆍ윤창현

박대수 · 김석기 · 정진석

태영호 · 조수진 · 정희용

박 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, 취업보호, 영 농정착지원,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·우선구매 정책 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남북하나재단의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57.4% 중 14.6%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영업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필요한 것으로 보임.

현행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.

이에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6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자영업 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 탈주민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창업 교육
- 2. 현장 실습
- 3. 창업 상담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6(자영업 지원) ① 통일
	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
	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창업을
	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
	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	<u>1. 창업 교육</u>
	<u>2. 현장 실습</u>
	<u>3. 창업 상담</u>
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항</u>
	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・재정
	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
	<u>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.</u>